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업진흥지역 등 변경 및 해제 사유 추가〉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38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농업진흥지역 등 변경 및 해제 사유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9.
3. 회 부 일 : 2024.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이 그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받는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를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농업진흥지역 등 변경 및 해제 사유 추가(안 제31조제1항)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또는 변경 사유 등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u>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u>이하이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낮아진 경우</u> <u>마. 경지정리를 한 농업진흥지역의 외곽 또는 사이에 연접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경지정리를 하지 아니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u> <u>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u> <u>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u> <u>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u> <u>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u> <u>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2024년 연말까지 농지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추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3ha→6ha)하고 해제사유를 확대 규정할 경우 농지면적 감소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야기하고 영농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낮은 농지 비율, 우량농지의 보전가치 및 경지정리 농지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진 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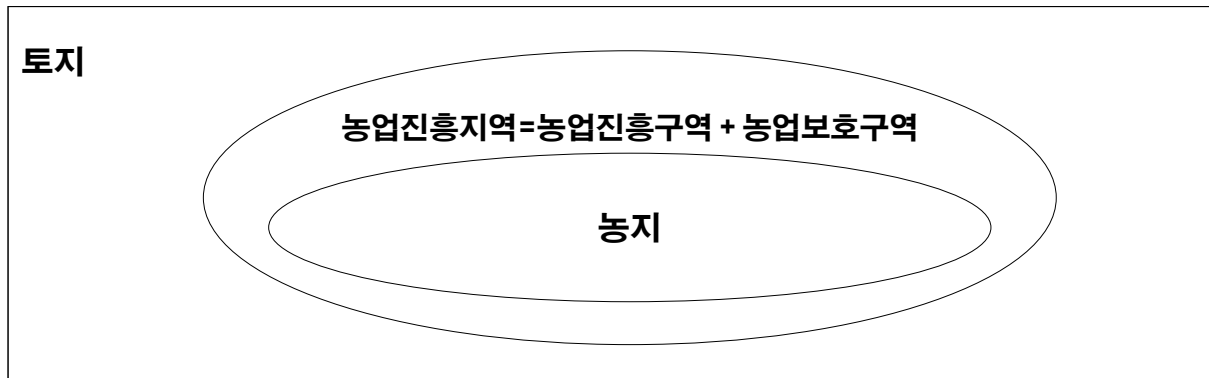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농업진흥지역은 현행법 제28조제1항1)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30조2)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고 있음.

-
- 1)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후 략>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② 농업‘보호’구역 등의 용도구역으로 구분됨.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구분]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만이 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농어업 관련 공공시설(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미곡 종합처리장, 농어업인 주택 등)은 설치가 일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농지는 전용이 필요함.

② 농업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외에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하거나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 시설의 설치도 허용되고 있음³⁾.

3)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

한편, 농업진흥지역이나 용도구역(이하 ‘농업진흥지역등’이라 함)의 해제나 변경(이하 ‘해제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농업진흥지역 등의 해제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그 해제등의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⁴⁾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등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 현행법 제31조⁵⁾에 따라 지정 절차를 준용하여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 정책심의회⁶⁾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 1만㎡ 이하 등 제외)을 받아야 하므로 농업진흥지역등 해제등 권한도 사실상 농식품부장관에게 있음.

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후 략>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4) 「**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후 략>

5)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⁶⁾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비교]

구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농지이용행위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 행위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에 필요한 저수지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허용행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미곡종합처리장, 육종시험·연구시설, 농어업인주택, 농업기계 수리시설, 농산어촌체험시설 및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등 설치	진흥구역 전용행위 +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
지정권한		시·도지사 지정→ 농식품부장관 승인	
해제권한		1만㎡ 초과 시 농식품부장관, 1만㎡이하 시·도지사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와 제출자료('24.9.13)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등의 해제나 변경 등 사유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①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한 면적을 현행 시행령 규정보다 확대(3ha→6ha)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②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 비율 이하이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낮아진 경우, ③ 경지정리를 한 농업진흥지역의 외곽 또는 사이에 연접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경지정리를 하지 아니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⁶⁾.

6) 해제, 변경 등 사유의 변경 연혁은 참고자료 참조

[현행 법령 및 개정안 규정 비교]

구분	현행 시행령	개정안
농업 진흥 지역 해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 전용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u>3만제곱미터</u>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좌동 ▶ 좌동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u>6만제곱미터</u> 이하인 경우로 한정) ▶ <u>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 비율 이하이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낮아진 경우</u> ▶ <u>경지정리를 한 농업진흥지역의 외곽 또는 사이에 연접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경지정리를 하지 아니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u>
편입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 좌동
용도 구역 변경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후 략>	▶ 좌동 ▶ 좌동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

먼저, ①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 면적을 현행 3만m²(3ha)에서 6만 ha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초 설정된 ‘3ha’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농식품부훈령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중 농지의 집단화 정도는 농업 기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야지 10ha, 중간지 7ha, 산간지 3ha 이상⁷⁾⁸⁾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면적은 최소 면적인 3ha에 맞춰 설정된 것임.

다음으로, ②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비율과 보전가치의 정도, ③ 경지정리 여부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추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는 우량농지가 규모화된 지역의 보전과

7)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는 토양의 지목별 토지적성등급과 경사도에 따른 다음 기준을 적용함

지대별	논		밭		과 수 원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경사도	토지적성등급
평야지	5%이하	2급지이상	7%이하	2급지이상	15%이하	3급지이상
중간지	5%이하	3급지이상	“	“	“	“
산간지	7%이하	“	“	“	“	“

8)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별표 2]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1. 지정기준설정 방향

-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설정한다.

2. 지정기준의 구분

(1) 농지집단화도의 기준

- 다음과 같은 지역을 지정한다.
 - 평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위주로 대형농기계 투입이 가능하므로 집단화 규모 10ha이상인 지역
 - 중간지는 영농유형이 대부분 수도작 + 전작형태로서 7ha의 경우 기계화 연면적은 10ha의 효과가 있으므로 집단화 규모 7ha이상인 지역
 - 산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작 + 전작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지형여건상 전작의 기계화는 어려우므로 수도작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화 규모 3ha이상인 지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현재도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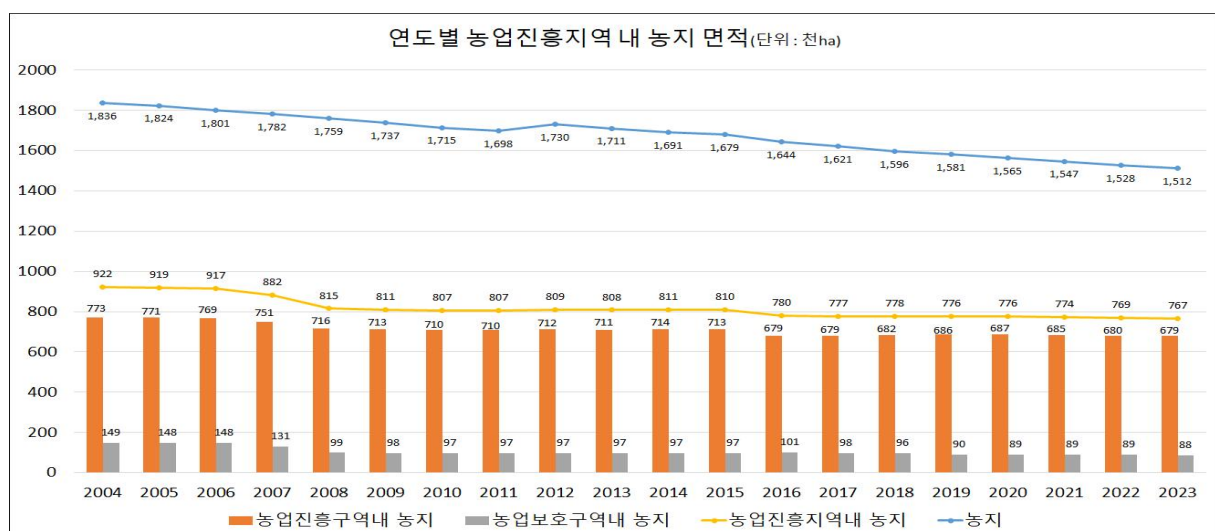
농지면적은 최근 10년간(2014~2023) 19만 9,000ha 감소(△13.2%)하였고, 전체 농지의 51%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역시 4만 2,000ha 감소(△5.4%)하였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지 않고 해제 사유를 확대할 경우 우량농지의 감소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음.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적 등 감소 추이]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농지면적(천ha)	1,691	1,679	1,644	1,621	1,596	1,581	1,565	1,546	1,528	1,512
■ 농업진흥지역(천ha)	1,036	1,036	994	988	987	986	987	986	986	986
- 진흥구역	927	927	862	849	842	840	841	840	840	840
- 보호구역	109	109	132	139	145	146	146	146	146	146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천ha)	811	810	780	777	778	776	776	773	769	766
- 진흥구역 농지	755	754	705	700	698	696	696	693	690	687
- 보호구역 농지	56	56	75	77	80	80	80	80	79	79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와 제출자료('24.9.13)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와 제출자료('24.9.13)

실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3년 동안 농업진흥지역의 신규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제 면적은 각각 588.4ha, 476.5ha, 666.4ha에 달하였음.

[최근 3년 농업진흥지역 지정·환원·해제 면적]

(단위: ha)

지역	2021년				2022년				2023년			
	지정	환원	해제	정정*	지정	환원	해제	정정	지정	환원	해제	정정
계	-	-	△588.4	-	-	0.2	△476.5	-	-	0.4	△666.4	894.1
부산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인천	-	-	△1.4	-	-	-	-	-	-	-	△19.1	-
울산	-	-	△0.2	-	-	-	-	-	-	-	-	-
세종	-	-	△4.8	-	-	-	-	-	-	-	△63.4	-
경기	-	-	△158.2	-	-	-	△252.0	-	-	-	△89.0	-
강원	-	-	△11.7	-	-	-	△25.2	-	-	-	△102.3	102.3
충북	-	-	△123.2	-	-	0.2	△75.4	-	-	0.3	△85.2	-
충남	-	-	△77.2	-	-	-	△65.6	-	-	-	△33.2	726.4
전북	-	-	△35.5	-	-	-	△2.9	-	-	-	△96.1	0.1
전남	-	-	△29.3	-	-	-	△15.1	-	-	-	△125.7	59.2
경북	-	-	△30.5	-	-	-	△6.9	-	-	0.1	△36.5	5.5
경남	-	-	△116.4	-	-	-	△33.4	-	-	-	△15.9	0.6

* 정정은 농업진흥지역 도면 정리 등에 따른 오기 정정 면적임.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제출자료('24.9.13)

한편, 우량농지의 감소는 식량자급률⁹⁾ 목표¹⁰⁾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식량자급률 실적은 2019년 이후 50%를 하회하여 목표를 달성

9) 식량자급률: 사료용 소비·수출·원조를 제외한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
(계산식) 식량자급률(%) = [국내 생산량 / 수요량 - 사료·수출·해외원조]

10)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식량 등의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17년까지 자급목표는 57%였으나, 2022년까지 55.4%로 하향 조정된 이후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식량자급률 목표 및 실적]

식량자급률	'17	'18	'19	'20	'21	'22	'23
목표(%)	57	55.4					55.5
실적(%)	51.9	50.3	49.3	49.3	44.4	49.3	10월 말 확인 가능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제출자료('24.9.13)

다만, 우량농지 보전과 관련하여, 농지의 51% 수준에 불과한 농업진흥지역 중심의 농지 보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우량농지 개념 재정립과 더불어 농지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보전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¹¹⁾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5

11)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024. 7.

참 고 자 료

참고

농업진흥지역등 해제등 사유 변경 연혁

- ▶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요건 완화(시행령 2002.3.30.일부개정)
 - 여건변화로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1만㎡이하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근거 마련
 - 여건변화 시 3만㎡이하 범위 내에서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 생략
- ▶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제도 보완(시행령 2006.1.20.일부개정)
 -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 (종전: 1ha 이하 → 개정: 2ha 이하)
 -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종전: 0 → 개정: 1ha 이하)
- ▶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다른 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시행령 2008.6.5.일부개정)
 -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새로운 지역을 대체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 ▶ 여건변화에 따른 해제 가능 면적 완화(시행령 2016.11.29.일부개정)
 -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 가능 면적을 2ha이하 → 3ha로 확대